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세계에 -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국토교통부

국 토 교 통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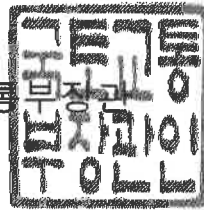
수신 (사)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경유)

제목 정관 변경 허가(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1.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관 변경허가 신청 관련입니다.
2. 귀 협회에서 요청한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허가하오니, 관련 법령 준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정관 변경 허가서 1부.
2. 개정정관 전문 1부. 끝.

국토교통부



주무관 김연주 행정사무관 교육 주택기금과장 전결 2026. 5. 6.
정수호

협조자

사행 주택기금과-9943 (2026. 5. 6.) 접수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
정책관 주택기금과 / <http://www.molit.go.kr>

전화번호 044-201-3343 팩스번호 044-201-5530 / kimyj@molit.go.kr / 비공개(5)

K-헤리티지 , 어제의 유산에서 내일의 자부심으로

정관변경허가서

「민법」 제42조 및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관 변경을 허가합니다.

2026년 5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부동산 마케팅 및 관련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부동산 마케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하고, 종전의 제8호를 제12호로 한다.

8. 부동산 마케팅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9. 부동산 마케팅 종사자의 자격인증·능력검정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업
10. 회원사 인력 확보를 위한 취업 지원·인턴십 연계 및 고용촉진 사업
11.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및 보조금 사업의 수행
12.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월간지 및 회지의 발행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배포
2.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자격과정 운영

4.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회원)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교육회원으로 구성한다.

3. 교육회원은 법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관련 기업 등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서면의결 등) ①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 또는 전자적 수단(화상회의, 전자투표 등)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전자적 수단에 의한 참석은 출석으로 본다.

제28조제1항 중 “연 2회”를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으로 개정한다.

제31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또는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4호를 제7호로 한다.

4. 교육·연수 수수료 및 자격검정 수수료

5. 정부 보조금 및 위탁사업 수입

6. 출판물·콘텐츠 판매 수입

7. 기타

부 칙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허가조건

변경허가에 따른 허가조건은 별지와 같다.

[별지]

변 경 허 가 조 건

- 본 법인에 대하여 「민법」 제38조의 경우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나. 주무관청의 검사감독, 법령·정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에 3회 불응하는 경우

다. 수익사업의 비중이 목적 사업을 위한 부대사업의 범위를 넘거나, 그 수익금을 목적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II. 개정 정관

※ 개정되는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

정 관

- 제정 2019년 05월 16일
- 개정 2019년 09월 16일
- 개정 2021년 01월 06일
- 개정 2021년 11월 01일
- 개정 2022년 05월 25일
- 개정 2024년 05월 07일
- 개정 2026년 03월 24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며, 영문명은 "Korea Real Estate Marketing service Association"으로, 약칭은 "KREMA"라고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부동산 마케팅 및 관련 서비스업의 건전한 발전과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고, 부동산 마케팅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하여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과 부동산 마케팅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법인은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하여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조직한다.

제4조(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5층(논현동, 건설회관)에 두며, 필요한 곳에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登記 후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사 업

제5조(일반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약자 또는 수분양자에게 정확한 정보와 친절한 서비스 제공 등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관련 법령·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건의
3.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의 교육 및 그 이력관리
4.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계의 자율정화 등 이미지 개선 활동
5. 아파트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홍보활동
6. 회원의 공동이익과 권익보호 및 품위유지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사회단체 활동에의 참여
8. 부동산 마케팅 관련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정보 플랫폼 구축·운영
9. 부동산 마케팅 종사자의 자격인증·능력검정 및 경력관리에 관한 사업
10. 회원사 인력 확보를 위한 취업 지원·인턴십 연계 및 고용촉진 사업
11.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 및 보조금 사업의 수행
12.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특별사업)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협력증진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1. 월간지 및 회지의 발행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발간 및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배포
2.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및 자격과정 운영
3.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4. 협회 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

제3장 회 원

제7조(회원)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교육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자로서 회원 가입절차를 마친 법인업체 또는 개인업체로 한다.
2. 준회원은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부동산 관련단체 또는 건설업체 등 기업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단체 또는 기업체로 한다.
3. 교육회원은 법인의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인증을 취득한 개인, 또는 관련 기업 등으로서 이

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준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인에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입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법인은 등록 또는 입회수속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은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법인의 모든 권익을 균점, 향수하는 권리
2. 법인의 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협회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 부동산 마케팅 사업자의 품위유지 의무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의무
4. 법인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의무

제11조(회원의 자격정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또는 선임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그 직에서 해임된다.

1. 징계처분 등으로 회원으로서의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은 때
2. 회원이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회비를 회비 납기 기한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사회에서 회원 자격정지를 결의한 때

제12조(회원의 자격상실 및 탈퇴)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관련 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되었을 때
2.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제명된 때
3. 회원이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

한 때

②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회원의 자격상실 또는 탈퇴 등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4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20인 이내 (회장, 부회장 포함)
3. 감사 2인

②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회장은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을 받아 총회가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회원이사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③회원이사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하며, 상임이사 1인은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비회원 중에서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선출한다. 다만, 회원이사가 임기 중 정회원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하거나 정회원으로부터 면직된 때에는 당해 정회원의 후임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새로 지정하는 자가 잔임기간 동안 회원이사로 보선된 것으로 본다.

④감사는 정회원의 대표이사 또는 정회원이 지정하는 자 중에서 총회가 선출한다.

⑤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되거나 임원회의에 장기간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장은 이사회에 의견을 청취하여 총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⑥임원의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③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③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최연장자인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90일 이내에 조속히 차기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이 경우 회원임원 및 상임이사로 구성된 5인 이내의 회장추천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정기총회가 90일 이내에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⑤회원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⑥상임이사는 상근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무를 처리한다.

⑦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직무유기 또는 태만,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법인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②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자격이 상실된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절차 없이 선고받은 날로부터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②임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 자격이 정지되며,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은 그날로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제19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법인은 명예회장 1인과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명예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전회장으로 하며, 고문은 법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주택 건설사업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보수 등) ①임원으로서 상임하지 아니하는 자와 고문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상근하는 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총 회

제21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 목의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 가.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議事目的)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다.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라.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회장은 임시총회의 소집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 소집 시에는 회장은 회의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④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 다만, 부회장 및 상임이사는 제외한다.
2. 법인의 청산, 해산결의
3. 정관의 제정 및 변경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5.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8. 그밖에 이에 준하는 중요사항

제24조(의결방법) ①총회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회장은 재적회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선출하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제23조 제1호 중 임원의 해임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5조(서면의결 등) ①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 또는 전자적 수단(화상회의, 전자투표 등)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총회의결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전자적 수단에 의한 참석은 출석으로 본다.

제25조의2(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그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회의록) ①총회 및 이사회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개회 및 폐회의 연월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회원 및 결석회원
4. 보고사항
5. 회의에 부의된 안건 및 의제
6. 결의사항
7. 발언요지
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이 사 회

제27조(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상임이사를 포함한다)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회의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연 4회 이상(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안의 성격상 기밀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사항 또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일시 차입 및 기채에 관한 사항
9. 부회장 및 상임이사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원의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1. 회비 부과에 관한 사항
12. 정부에 대한 중요한 건의
13.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14. 회원의 청원 및 복리에 관한 사항
15.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
16.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 폐지에 관한 사항
17. 기타 회장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0조(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장 사 무 국 등

제31조(사무국 등) ①법인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법인 사무국의 직제, 정원 및 직원의 임면과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사무국의 사무국장이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상임이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31조의2(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협회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설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

회를 들 수 있다. 필요시 관련 공무원, 교수 및 외부인사를 당연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촉, 구성, 임무 및 임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 또는 이사를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분과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건의할 수 있다.

제32조(급여) 직원의 급여, 수당, 상여 및 퇴직금, 근로재해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8장 재산과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의2(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 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회계연도) ①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회장은 사업운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총회의 결의를 받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5조(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각종 찬조금,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교육·연수 수수료 및 자격검정 수수료
5. 정부 보조금 및 위탁사업 수입
6. 출판물·콘텐츠 판매 수입
7.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매 회계연도의 결산잉여금은 적립금을 제외하고는 익년도로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회비) ①법인의 회비는 입회비, 기본회비, 특별회비로 구분하되, 다음과 같다.

1. 입회비라 함은 법인에 가입과 동시에 납입하는 가입비를 말한다.
2. 기본회비라 함은 법인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회비를 말한다.
3. 특별회비라 함은 법인의 재정지원을 위하여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납부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업 또는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찬조금, 기부금품 및 별도의 회비를 말한다.

②회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7조(예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세입세출예산서

제38조(결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세입·세출결산서
3. 잉여금처분계산서

②감사는 감사의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해당 사업연도 감사결과 보고서

제39조(예산회계에 관한 규정) 법인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장 포상 및 징계

제40조(포상) 회장은 법인의 설립목적과 부합하는 부동산 마케팅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또는 법인 사업에 공헌한 회원 등에 대하여 법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41조(회원의 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회의 결의로써 징계처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케 한 경우
2. 부동산 분양대행 등 부동산 마케팅 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회원으로서 각종 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의무를 심히 태만히 한 경우
4. 법인의 조회응답 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②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제명처분
2. 3월 이상 1년 이하의 회원권리행사 정지처분
3. 당사자에 대한 계고

③제40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장 정관의 변경

제42조(정관의 변경)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회의 결의로서 변경을 요구한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한 때

②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1부
2.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3.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 1부

4.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5.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제11장 보 칙

제43조(규정 및 내규) ①법인은 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의2(해산) ①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에 따라 해산등기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의3(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본회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3조의4(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한다.

제43조의5(선거운동 관여 금지) 법인은 법인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의6(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의 공개) 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4조(준용)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 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 시행 이전에 법인설립 발기인회가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

부동산마케팅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발기인은 본 법인 설립과 동시에 회원이 되며, 설립등기 완료시까지 총회의 권한은 발기인회가 이를 대행하며 추진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임원의 임기가 변경되는 경우 현재 임원의 임기는 개정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24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